

<별지 제48호서식>

구입(물품·기타) 지출결의서

증 제 호									
담 당	팀 장	재무관	2015년도 일반회계		취급자	지출원			
			세출과목						
발 의	2015.11. .	인	조 직	의 회 사 무 국	발 의	2015.11. .	인		
원인행위부 기 재	2015.11. .	인	정 책	지방의회운영지원	지출부기재	2015.11. .	인		
주 문	2015.11. .	인	단 위	의정활동지원					
납 품	2015.11. .	인	세 부	기 본 경 비	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	2015. . .	인		
검 수	2015.11. .	인	편성목	일 반 운 영 비					
물품출납부 기 재	2015. . .	인	통계목	사 무 관 리 비	지 급 명 령 번 호	제 호			
금사십삼만원(금430,000원)									
<p>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5년 11월 일</p> <p>주소 : 서울 동작구 상도로 34길 53 상호 : 시디즈 동작점 성명 : 송 미 주 인</p>									
적 요					거래은행	우리은행			
					계좌번호	130-05-063810			
위 금액을 청구함.					위 금액을 영수함.				
2015년 11월 일					2015년 11월 일				
성 명 송미주 인					성 명 이정열 인				
주관과	동작구의회 구의회 사무국								
취급자 인									

구 입 물 품 명 세 서

품 명	규 격	단 위	수 량	단 가	금 액	비 고
사무용의자	660×550×10 040mm	조	1	390,910	390,910	VAT별도

승 낙 사 항

1.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,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.
2.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,000분의()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.
3.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·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.
4.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
5.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.